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안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

- 기업 스스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 회사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우리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경영자 리더십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설정 -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 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에 대한 근로자 참여 공유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
도급용역관리	도급·용역 위탁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참여 안내

I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Risk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50억원 이하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②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형사처벌 현실

- 기업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법령1,220개
- 중대재해처벌법 재판 35건에서 대표이사 33건 유죄판결, 5건 실형선고, 26건 집행유예

II 정부지원 대상 및 내용, 혜택

①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업종무관)

② 지원구조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 부산광역시 비용90% 지원

③ 지원내용 :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지원, 안전관리 구비서류제공 등

④ 지원혜택 : 중처법에 따른 기업경영 Risk 최소화, 근로자 산재예방 및 생산성 향상, 최소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채용에 준하는 전문인력 활용 효과

III 신청 안내

① 신청기간 : 상시 모집 ▶ 전화상담 후 방문 예정

② 문 의 : 부산경총 중대재해종합대응센터 051-866-5519, 867-5519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0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법입니다.

02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가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03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나요?

- 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주도 적용됩니다.(업종 무관)

04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 아닙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제반 업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기업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성,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05 음식점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제조·건설업 등에 비하여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인명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 사업주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06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 불문)
-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만 포함됩니다.

07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 기업 단위로 적용됩니다.
- 즉,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하여 5명 이상일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이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08 2천만원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 건설업 또한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09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하나요?

-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사내 전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
- ②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지정(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 ③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 청취 절차 마련
- ④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 방지대책 마련
- 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조치



안전 물음표를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이 발생합니다.

안전 느낌표로

중대재해종합대응센터에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체계를 구축토록 지원합니다.
기업의 안전 관리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 Risk 최소화화 and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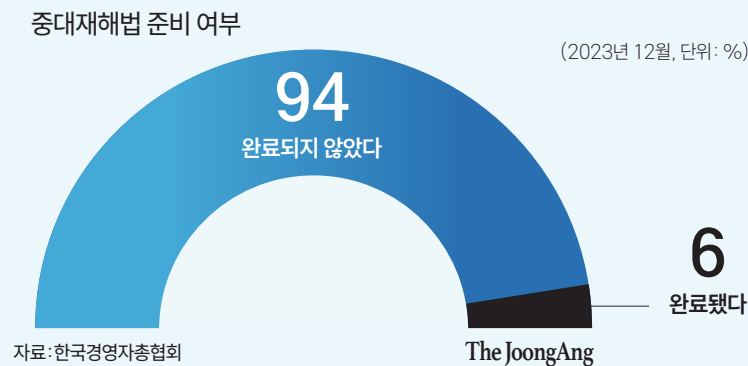
KEF 부산경총
BUSAN EMPLOYERS FEDERATION
중대재해종합대응센터

부산경총 중대재해종합대응센터 소개

설치 배경

- 정부·공단주도의 산재예방사업 추진으로는 사고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는데 한계
-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으로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 기업의 법 준수 부담 증가
-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경영계 차원의 종합대응센터 구축·운영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실태조사



운영 목적

중소기업의 안전보건활동 지원 및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주요 업무

- 산재예방 관련 정부사업 연계 지원
※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스마트안전장비 지원,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 중소기업 대상 안전관리 매뉴얼 가이드 보급
-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과정 운영
- 안전보건정보 및 자료 제공
-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추진
- 법률 준수 및 재해 발생 시 대응 상담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법률상담

「부산형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산업안전관리에 취약한 부산지역 50인(억) 미만 사업장을 자격 요건이 되는 공동안전관리자가 지역기업을 지킴으로써 노동시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 상시근로자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부산경총에서는 '24년 4월 1일 대응센터 및 부서를 설립
-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안전보건 역량이 부족한 만큼 지원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산업안전의 중요성과 대진단을 통해 맞춤형 산업안전 체계구축을 지원

기업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지원내용

산업재해예방과 대응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참여기업에 배정

- ▶ 스마트안전장비 및 시스템 정착, 산업안전 관련 행정업무 처리, 재정지원사업 신청업무 등을 추가 부여

공동안전관리자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내용



주요내용

참여기업에 공동안전관리자가 정기적 사업장 방문 컨설팅을 통해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사항 등을 관리

2025년 「부산형 공동안전관리자」

[접수번호] []

참 여 신 청 서



사업장명		☐ 개인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생 산 품		
근로자수		*현재기준	사내협력업체		
소 재 지	(우)				
산업안전보건 체제 현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성 명	안전보건관리자	성 명	
	관리감독자	성 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성 명	
산재 현황	24년		담당자 정보	성 명	(직위:)
	23년			연락처	
	22년			이메일	
본 사는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실시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며, 관련 정보는 지원 목적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인)					
부산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종합대응센터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회원가입 및 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아이디,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 주소,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회원 가입일로 부터 회원 탈퇴 까지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000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시 회원가입 불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출자료

① 사업자등록증 ②통장 사본 ③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